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29

2023. 9. 1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5월 16일, 유정희 의원(찬성자 25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3.9.11.)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 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유정희 의원)

1. 제안이유

○ 「장애예술인지원법」 개정에 따라 장애예술인이 자립적으로 창작 활동에 종사하기 위한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행계획에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4조제항제2호의2 신설).
- 나.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5조의2 신설).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주우철)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2023년 3월 28일 시행)의 개정에 따라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홍보·유통을 강화하고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나. 장애예술인 지원 현황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서울시 장애예술인 현황(2023년 8월)에 따르면,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서울시 예술인 총 6만 2천여 명 중 장애예술인은 총 838명으로 남성이 68.3%로 여성보다 2배 이상 많았으며, 강북구와 노원구에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붙임1).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과 연도별시행계획을 '서울 예술인 복지증진 기본계획(예술인플랜 2022~2026)' 내 포함하여 수립하고 있으며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음.

< 서울시 장애예술인 지원 사업 현황 >

연번	사업명	예산	비고
1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200백만원	서울시
2	장애인 공연예술활동 지원	60백만원	서울시
3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585백만원	서울문화재단
4	장애예술인 창작활성화 지원	500백만원	서울문화재단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실시한 '202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50.1%가 비정규직이고, 개인 평균수입이 연간 약 200만원 대이며, 가장 필요한 지원은 창작 활동비인 것으로 확인됐음.

다. 조례의 타당성

- 최근 장애예술인의 예술 활동 참여기회를 확장하고, 경제적인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3. 3. 28.시행)되었음.
- 개정 법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구매 총액 기준으로 해당연도 구매하는 창작물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미술품, 공예품, 공연 등)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는 장애예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장애예술인의 창작지원과 예술 활동 기반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라. 주요 조문 검토

(1)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 사항 신설(안 제4조)

○ 개정안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를 신설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생 략)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2의2.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한다)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이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수행 해야 할 시책을 구체화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2)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 구매 의무화 신설(안 제5조의2)

○ 개정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시장이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2(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
	매) 시장은 「장애예술인지원법」제9
	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
	<u>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u>
	매하여야 한다.

-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서울시 등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활동 기회 확대와경제적 자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로 판단됨.
- 다만,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제도는 구매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것 외에 의무구매 비율 미달성 기관에 대한 부담금 부과 등의 처벌조항이 없는바, 제도가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해 보임.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적위원 9명, 참석위원 8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Ⅵ.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 임1 서울시 장애예술인 현황(2023.8월 기준)

ㅇ 총 괄

(단위: 명)

전국	서울시 전체	서울시 장애예술인
169,176	61,809(전국의 36.5%)	838

ㅇ 자치구별 현황

구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인원(명)	31	16	18	22	29	24	21	43	60
비율(%)	3.7	1.9	2.1	2.6	3.5	2.9	2.5	5.1	7.2
구분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인원(명)	26	55	47	23	43	32	49	26	14
비율(%)	3.1	6.6	5.6	2.7	5.1	3.8	5.8	3.1	1.7
구분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합	계
인원(명)	25	39	33	35	49	43	35	929	
비율(%)	3.0	4.7	3.9	4.2	5.9	5.1	4.2	838	

ㅇ 성별 현황

(단위: 명)

합계	여성	남성		
838(100%)	266(31.7%)	572(68.3%)		

ㅇ 연령별 현황

(단위: 명)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합계
인원(명)	110	169	155	170	135	78	21	838
비율(%)	13.1	20.2	18.5	20.3	16.1	9.3	2.5	100

ㅇ 분야별 현황

(단위: 명)

구분	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	복수	합계
인원(명)	118	176	18	-	228	20	20	103	44	39	7	65	838
비율(%)	14.1	21.0	2.1	0	27.2	2.4	2.4	12.3	5.2	4.7	0.8	7.8	100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정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729 발 의 년 월 일:2023년 05월 16일 발 의 자:유정희 의원(1명)

찬 성 자: 강동길, 곽향기, 김 경,

김규남, 김성준, 김영철, 김원중, 김춘곤, 남창진, 문성호, 박승진, 박칠성, 심미경, 아이수루, 옥재은, 유정인, 이영실, 이원형, 이종태, 임규호, 임종국, 전병주, 최민규, 한 신, 홍국표 의원(25명)

1. 제안이유

○ 「장애예술인지원법」개정에 따라 장애 예술인이 자립적으로 창작활동에 종사하기 위한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행계획에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2호의2 신설).
- 나.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5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예술인지원법」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한다)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시장은 「장애예술인지원법」 제 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 매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생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2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2의2.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
	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한다)에 대한 홍
	보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
	<u>항</u>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5조의2(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
	선구매) 시장은 「장애예술인지
	원법」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
	행령에 따라 장애예술인이 생산
	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여야
	<u>한다.</u>